

군포도시공사 제7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복리후생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김 상 권



2022년 11월 15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95 호

군포도시공사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

군포도시공사 복리후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의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복리후생비 지급기준(제6조 관련)

항 목	지급대상	지 급 기 준	지 급 일
정액급식비	임직원	· 140,000원	매월 급여일 지급
직급보조비	임직원	· 사장 : 500,000원 · 본부장 : 400,000원 · 3급 : 250,000원 · 4급~7급 :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	매월 급여일 지급
명절휴가비	설날 및 추석날(이하 "지급기준일"이라 한다) 현재 재직중인 직원	· 기본급 × 120% (설날, 추석날 각 60% 지급)	설날, 추석날 해당 월 급여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사장이 정하는 날
이	하	생	략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22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강 승 구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이 태 권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심 영 주 (3 9 0 - 7 6 4 3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

[별표1] 복리후생비 지급기준

항 목	지급대상	지 급 기 준	지 급 일
정액급식비	임직원	· 140,000원	매월 급여일 지급
직급보조비	임직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장 : 500,000원 · 본부장 : 400,000원 · 3급 : 250,000원 · 4급 : 165,000원 · 5급 : 155,000원 · 6~7급 : 145,000원 	매월 급여일 지급

개 정 안

[별표1] 복리후생비 지급기준

항 목	지급대상	지 급 기 준	지 급 일
정액급식비	임직원	· 140,000원	매월 급여일 지급
직급보조비	임직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장 : 500,000원 · 본부장 : 400,000원 · 3급 : 250,000원 · 4급~7급 :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	매월 급여일 지급